

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3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지역에 한해 대형 및 재활용폐기물의 수집·운반 업무를 대행하여 운영한 결과 사업 비용이 절감되었고 민원도 현격히 감소하는 등 주민들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

나. 따라서 예산 절감 효과와 대시민 서비스 향상 등 가시적 성과를 고려하여 현재 유예시점인 2014. 1. 1 이후에도 현재 대행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대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대형 및 재활용폐기물 수집·운반 업무의 직영 의무조항 및 현재 대행 중인 업무의 직영전환 관련 유예조항을 삭제함.

(안 제9조제1항 단서 및 조례 제936호 부칙 제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제출 2건(미반영)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.

조례 제936호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등의 대행)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수집·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」의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<u>다만, 이 조례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·운반은 시가 직접 운영한다.</u>	제9조(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·처리 등의 대행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<단서 삭제></u>
1. ~ 3. (생략) ② ~ ⑦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~ ⑦ (현행과 같음)
부칙<구미시 조례 제936호> <u>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수집·운반 업무를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는 시점은 2014년 1월 1일로 한다.</u>	부칙<구미시 조례 제936호> <u><삭제></u>

관련법령

□ 「폐기물관리법」

제14조(생활폐기물의 처리 등) ①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. 다만,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 <개정 2007.8.3, 2010.7.23>

②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7.8.3, 2010.7.23>

③ ~ ⑧ 생략

□ 「폐기물관리법」

제8조(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) 법 제14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08.7.29, 2009.12.24, 2011.9.7, 2013.5.28>

1.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(이하 "폐기물처리업자"라 한다)
2. 삭제 <2011.9.7>
3. 폐기물처리 신고자

4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(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·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것만 해당한다)
5. 가전제품 등을 제조·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가전제품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·처리하는 체계를 갖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
6. 삭제 <2011.9.7>
7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(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·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)
8.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·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(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